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영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수 신 처 수신처 참조
(경 유)

제 목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관련 협조 요청

1. 사회복지 증진에 힘쓰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의 조기 발견과 예방, 상담 및 교육, 치료 직업재활과 아울러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리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재가복지사업 진행)을 채용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모집분야

구분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정 규 직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재가복지사업 진행)	1명	-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보통 자격증 소지자 - 전산능력 실무가능자
근로 조건	근무형태		- 채용 시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급여기준		-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남해군) 기준적용

2. 전형방법

- 1)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2)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전형일정

전 형 절 차	일 정	비 고
응시 서류 접수	2022년 11월 25일(금) - 12월 9일(금) / 15일간 ※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방문, e-mail 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2일(월)	- 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	2022년 12월 13일(화)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51p) 참조

붙임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재공고 1부. 끝.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장권장하

수신처 가야대학교총장, 거제대학교총장, 거창대학교총장, 고신대학교총장, 경남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광양보건대학교총장, 김해대학교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마산대학교총장, 문경대학교총장, 부산가톨릭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부산장신대학교총장, 순천대학교총장,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신라대학교총장, 우석대학교총장, 위덕대학교총장, 인제대학교총장, 전주대학교총장, 진주보건대학교총장, 창신대학교총장, 창원대학교총장, 창원문성대학교총장, 청암대학교총장, 한국국제대학교총장(가나다 순)

★담당자 이경은	기획·운영지원팀장대리 신은경	사무국장 송수성	관장 11/28 이동주
----------	-----------------	----------	--------------

협조자
 시범 남해장북 2022-325호 (2022. 11. 28)
 우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 www.nam-hae.or.kr
 전화 (055)862-0012 / 전송 (055)863-0056 / nhro@narmail.net / 공개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재공고 제2022-48호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재공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관장 이 동 주

1. 모집분야

구분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정규직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재가복지사업 진행)	1명	-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보통 자격증 소지자 - 전산능력 실무가능자
근로조건	근무형태		- 채용 시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급여기준		- 2022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남해군) 기준 적용

2.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 www.nam-hae.or.kr/

3. 전형일정

전형절차	일정	비고
응시 서류 접수	2022년 11월 25일(금) - 12월 9일(금) / 15일간 ※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방문, e-mail 접수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2일(월)	- 홈페이지 공지
2차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2022년 12월 13일(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51p) 참조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 ※ 소정양식 : 홈페이지에 접속, 공지사항-채용 공고문에서 반드시 다운받아 사용
 - ※ 우편/방문/e-mail 접수시 기관양식 미 사용서류 접수불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부
- 자격증(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사본 1부

5.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 (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364-9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 인사담당
- E-mail : nhrc@hanmail.net

6. 응시자격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종사자)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희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희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

7. 기타 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야 및 인원의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862-0012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6개월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55-863-0056) 또는 이메일 (nhrc@hanmail.net)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의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개월간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약도

